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990호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246호(2025.02.06.)’로 열람공고한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05.15. ~ 2025.05.29.(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별관 4층 핵심정책추진단(☎02-820-9578)
 다. 공람사유 :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라. 공람내용 :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	69,120.2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9,120.2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57,465.5	83.1	-
		A-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332.3	28.0	-
		A-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8,878.7	27.2	-
		A-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254.5	27.9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9,078.4	13.3	-
		B-1	공공공지	1,594.7	2.3	-
		B-2	공공공지	888.7	1.4	-
		-	도로	6,595.0	9.6	-
시행구역 외	정비기반 시설	소 계		2,576.3	3.6	-
		-	도로	2,576.3	3.6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외 면적 내 지분매각 사도(949.0㎡) 포함

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0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 도로	서고시제64호 (75.5.7)	-
변경	중로	2	1	15~20	"	1,030 (296)	상도동 대3-18 (상도동 259-83)	상도동 중3-35 (상도동 248-16)	"	"	일부 폭원 변경 (현황 12m → 20m)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34 (237)	상도동 267-1 (상도동 244-294)	상도동 246-1 (상도동 246-1)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534 (237)	상도동 267-1 (상도동 244-294)	상도동 246-1 (상도동 246-1)	"	-	상도14구역(안) 도로 확폭 연계 반영
기정	기타	-	-	-	-	-	-	-	-	-	성대로1길변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295 (200)	상도동 345-13	상도동 188-42	일반 도로	-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38)	10	국지도로	126	상도동 260-14	상도동 260-20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38)	12	"	"	"	"	"	"	-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95	상도동 244-90	상도동 244-14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0)	8	국지도로	153 (74)	상도동 244-90 (상도동 239-30)	상도동 244-126	일반 도로	-	상도14구역(안) 도로 확폭 연계 반영
기정	소로	3	122	-	-	-	-	-	-	-	-
변경	소로	3	122	5	국지도로	18 (-)	상도동 238-19 (-)	상도동 238-19 (-)	"	-	도로 시종점 변경
신설	소로	1	(7)	10	국지도로	294 (93)	상도동 242-62	상도동 188-28	일반 도로	-	상도동 194-27번지 일원(장기전세주택(안)) 도로 확폭 연계 반영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80	상도동 188-29	상도동 238-3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174	상도동 238-4	상도동 238-2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4)	4	국지도로	103	상도동 239-40	상도동 345-13	일반 도로	"	지분매각 사도 연계
폐지	소로	4	116	4	-	92	상도동 248-11	상도동 247-1	-	-	-
폐지	소로	4	-	4	국지도로	95	상도동 245-15	상도동 345-13	일반 도로	(90.10.31)	사업추진구역1 내 도로
폐지	소로	4	-	4	국지도로	85	상도동 243-23	상도동 243-26	-	동작구고시 제1998-61호 (98.10.1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항임

2)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설	1	공공공지	-	상도동 238-25번지 일대	-	증) 1,594.7	1,594.7	-	B-1
시설	2	공공공지	-	상도동 259-79번지 일대	-	증) 888.7	888.7	-	B-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의 세부시설의 종류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협의할 것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거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기준 이상 설치

구 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 고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86세대	1,518.8㎡ 이상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83세대	1,509.4㎡ 이상		구역 내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29세대	1,653.1㎡ 이상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상기의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가) 공동이용시설 권장시설

구 분	시설유형	사유	비 고
권장시설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변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다. 교통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성대로변, 성대로1길변	•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성대로변 및 성대로1길변 일부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진출입구간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외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 진출입 허용	-
공공보행통로	도면참조	• 성대로변과 이면부 상도14구역 보행 연계 및 기존가로 기능을 유지하고자 공공보행통로(6m) 계획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57,465.5	-	-	-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6-18번지 일대	19,332.3	미정	-	-	-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39-83번지 일대	18,878.7	미정	-	-	-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9-7번지 일대	19,254.5	미정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마.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 분		위 치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사항「건축법」 제77조의 13)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 계			57,465.5	-	-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6-18번지 일대	19,332.3	• 대지의 조경(42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 지하층의 설치(53조) • 건폐율(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19조)	• 대지의 조경(42조) • 건폐율(55조) • 용적률(5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39-83번지 일대	18,878.7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9-7번지 일대	19,254.5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 분(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시행구역	A-1~ A-3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B-1~2)의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함

※ 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및 인접대지 경계부	- 가로변 건축한계선 3m 적용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도면참조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1/2이상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통로	도면참조	성대로변과 이면부 상도14구역 보행 연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안)

구 분(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 고
시행구역	A-1~ A-3	유형	• 공동주택용지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 치	구분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분양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 고
					공공	매입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6-18번지 일대	59type	78	18	-	60	-	-
			84type	408	26	86	296		
			소계	486	44	86	356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39-83번지 일대	59type	150	52	-	98	-	-
			84type	333	-	15	318		
			소계	483	52	15	416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도동 249-7번지 일대	59type	297	13	22	262	-	-
			84type	232	27	-	205		
			소계	529	40	22	467		
합 계				1,498	136	123	1,239	-	-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자.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120.2	-	69,120.2	100.0	-
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69,120.2	감) 57,465.5	11,654.7	16.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7,465.5	57,465.5	83.1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 고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 계		57,465.5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특별건축 구역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332.3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8,878.7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254.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 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6조), 대지안의 공지(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등	-

※ 특별건축구역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사항은 심의 및 협의를 통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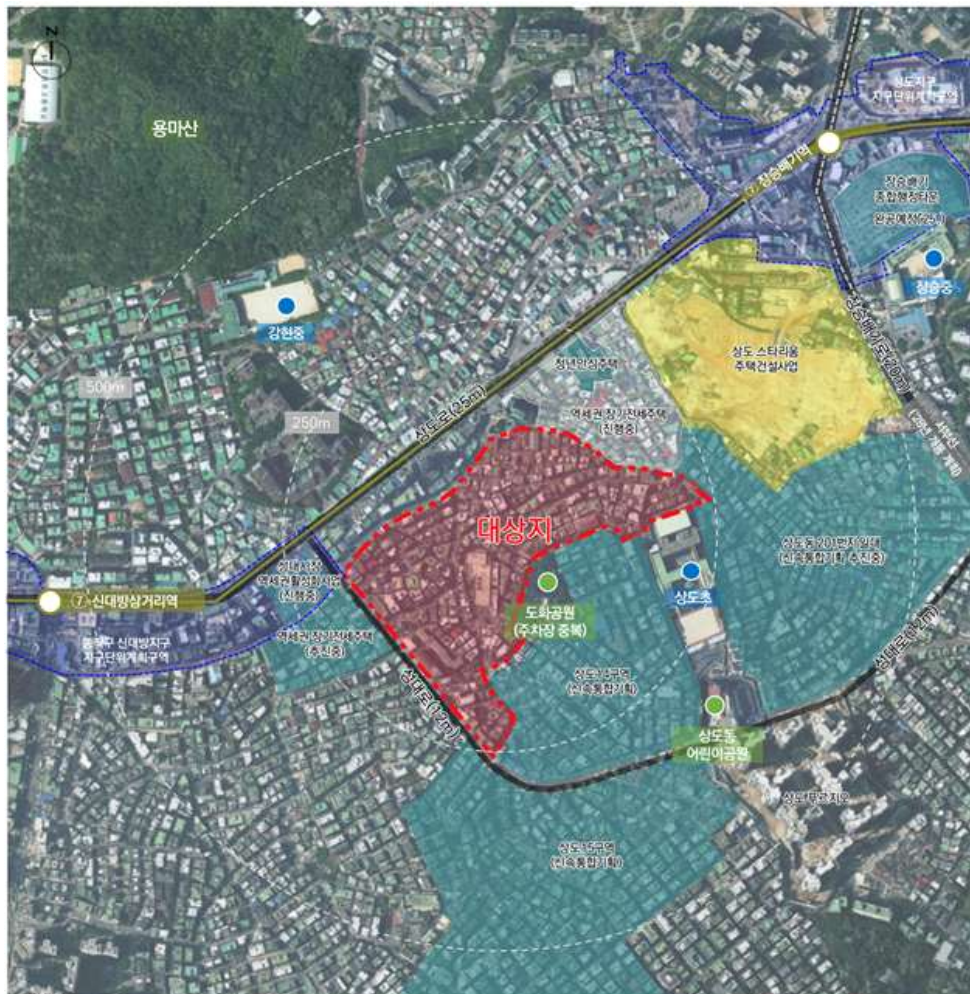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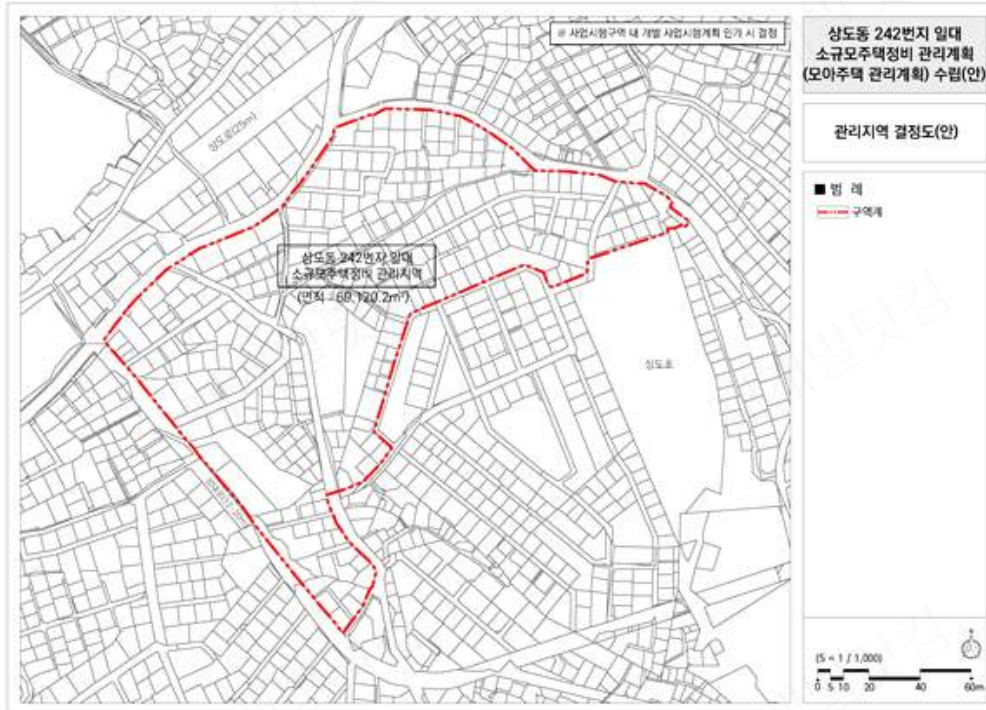
4. 관계도서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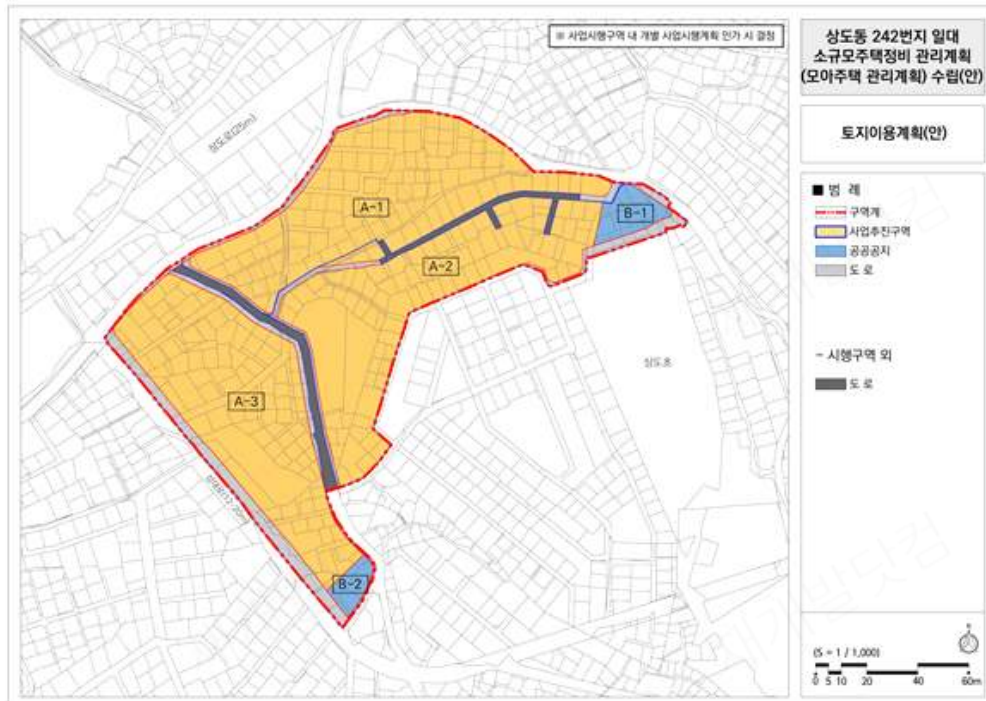
○ 관리지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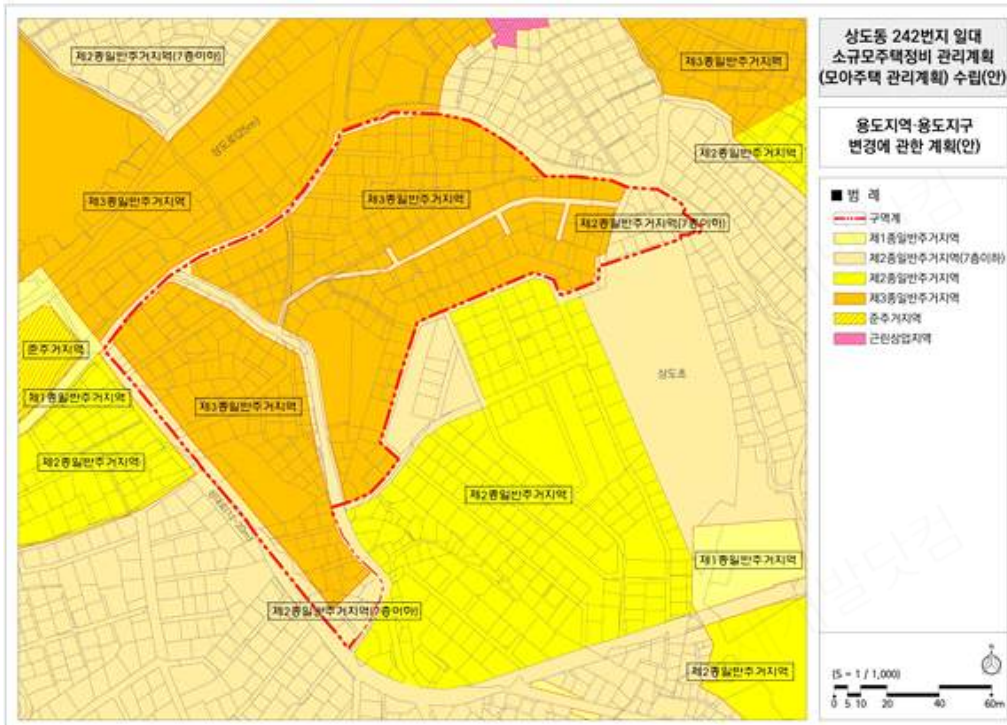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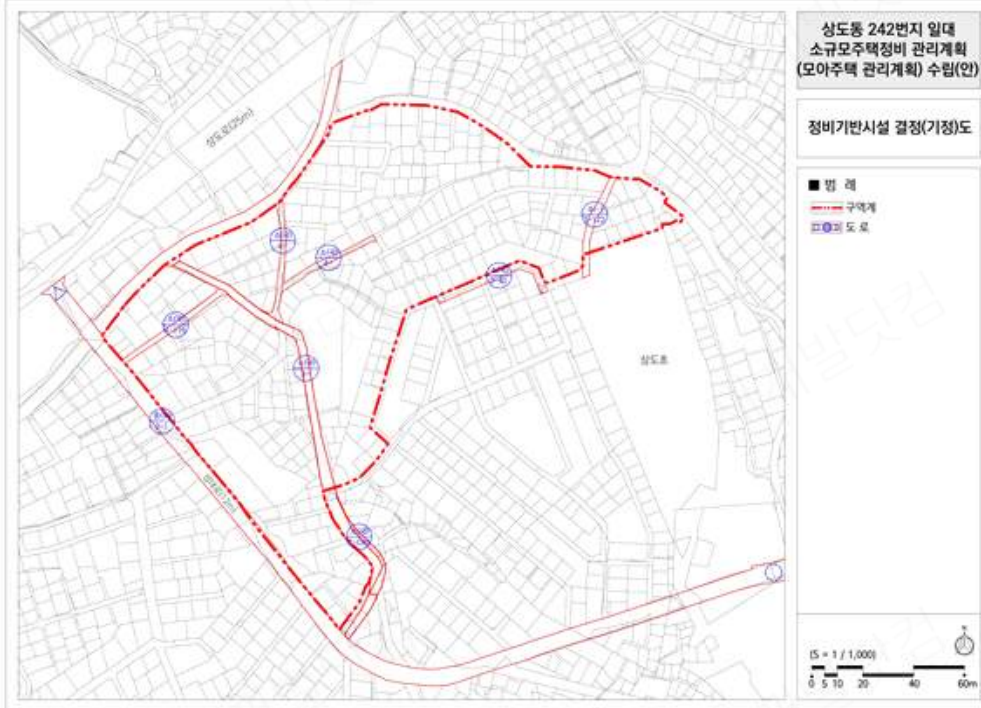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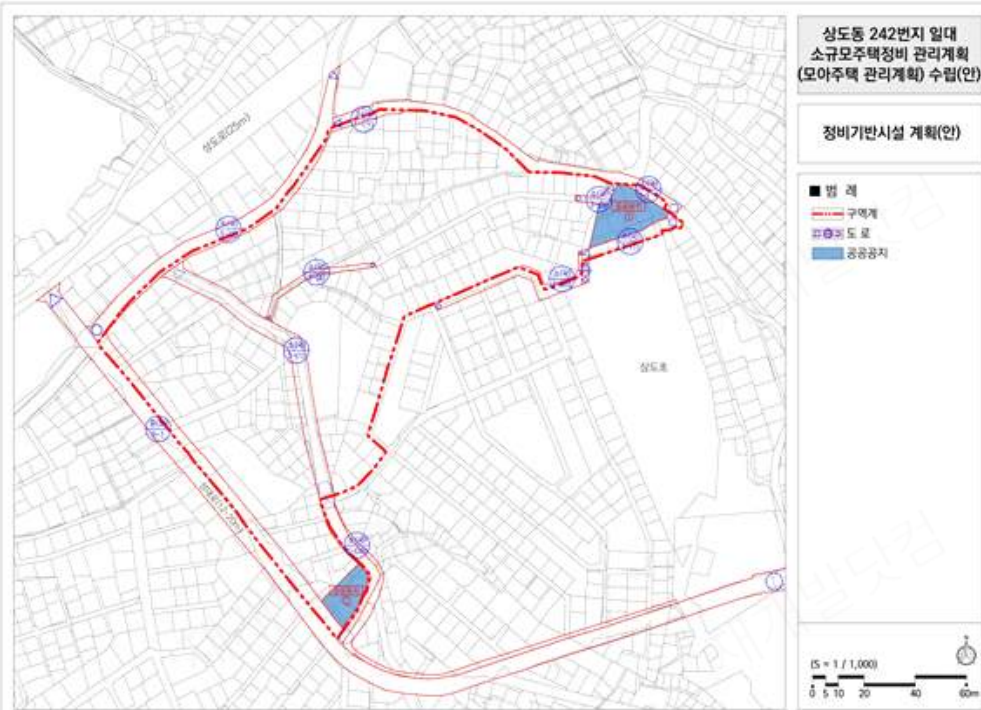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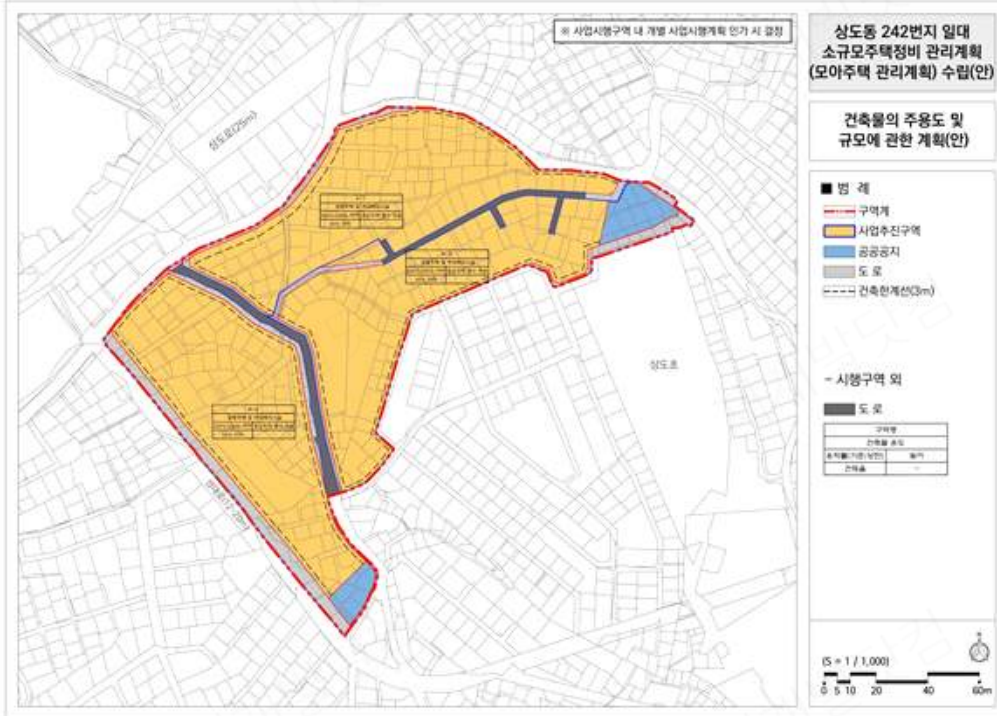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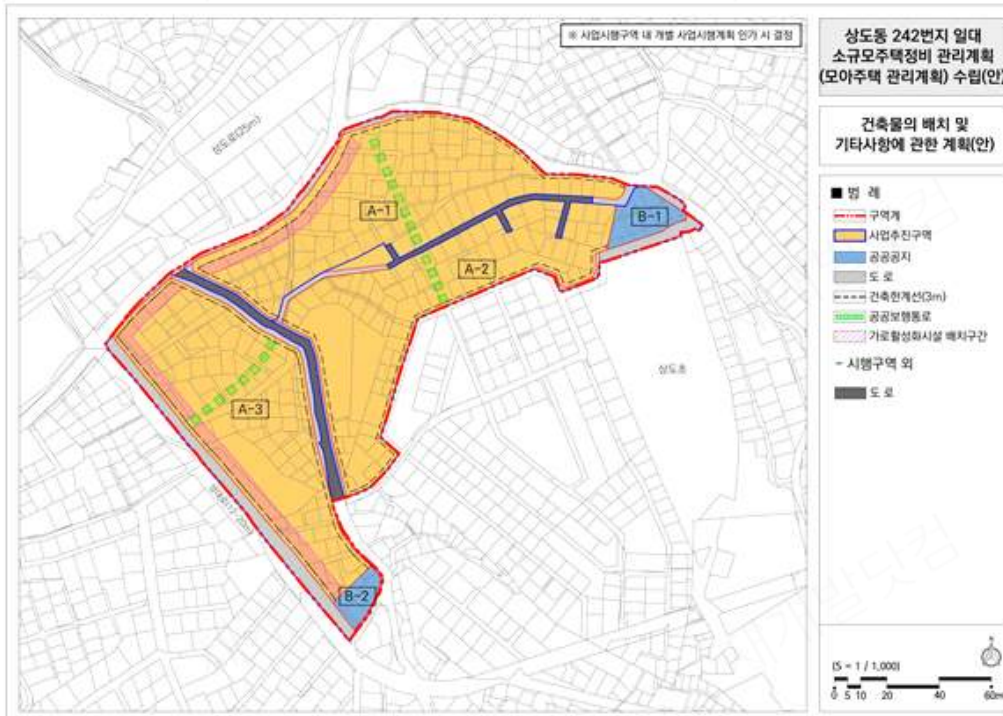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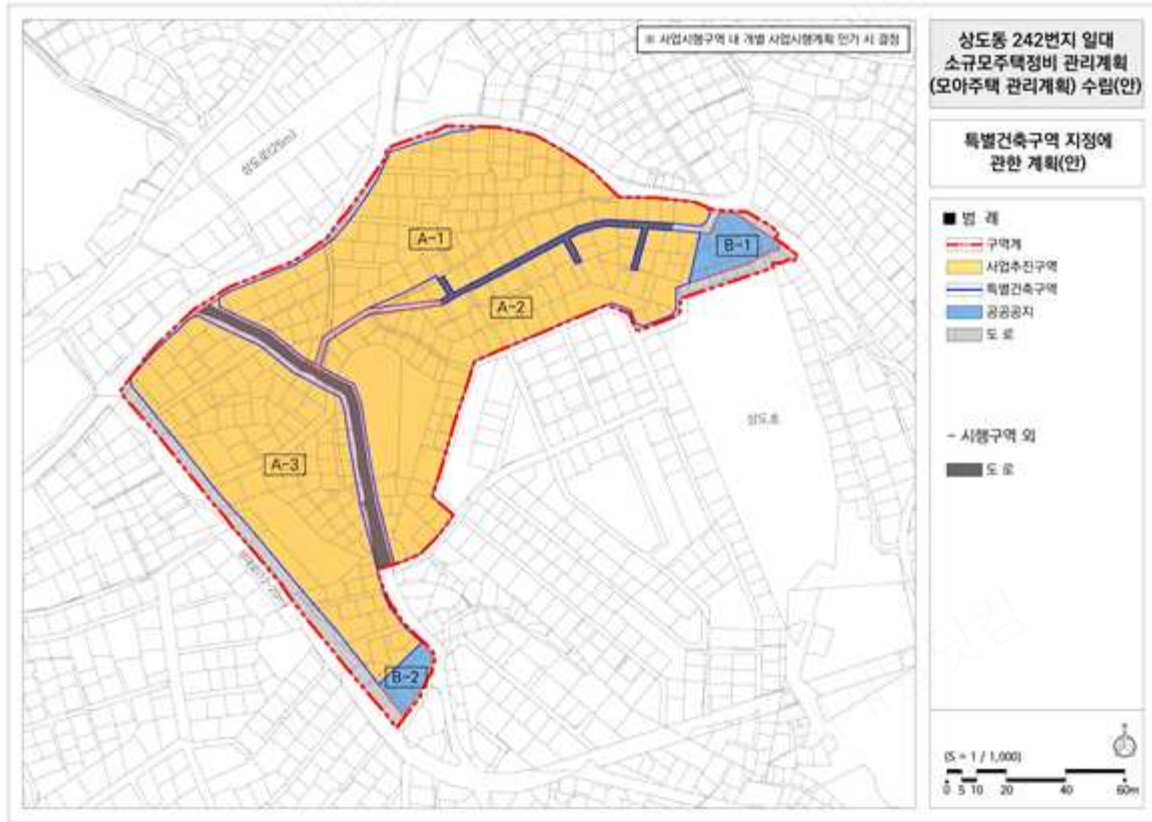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9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장기 등 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장기기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4호→5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제4호,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제1호, 안 제14조제1항제2호, 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16조제3항제4호, 안 제18조제2항, 안 제20조제1항,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정책과 어르신돌봄지원팀(전화: 02-820-9659, FAX: 820-9882, E-mail : danielia@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강구·시행”을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4호 본문 중 “사용중인”을 “사용 중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사용기간을”을 “사용기간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사용권”을 “장사시설 사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제2항을”을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사시설사용권”을 “장사시설 사용권”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 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제16조제2항 중 “주민편익증진”을 “주민편익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장사시설유골”을 “장사시설 유골”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 ----- 마련-----.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생 략)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③ (생 략)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3. (생 략)

4. 이미 봉안시설을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한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을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5.·6. (생 략)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 제2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른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장하려는 -----
- ----- 한정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용 중인 ----- . 다만 -----
----- 사용기간은 -----.

5.·6. (현행과 같음)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
----- 장사시설 사용권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1호 -----
-----.

③ ----- 제10조제2항에
따라 -----.

제11조(사용자의 신고)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2. ----- 장사시설 사용권 -----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

- -----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
--- 별표 2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처리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에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탁) ① (생략)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5. ~ 8. (생략)

④ (생략)

제18조(운영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별표 2-----
----- 증명서류-----.

제16조(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편익
증진 -----
-----.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장사시설 유골-----

5.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
----- 범위에서-----
-----.

제20조(지도·감독) ① -----

-----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

인사발령

[발령 제211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소 속	직 급	
1	윤 영 지	보 건 의 약 과	지 방 보 건 서 기	복 직 을 명 함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

2025. 5. 14.字.

[발령 제212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부 서	직 급	
1	박 선 희	감 염 병 관 리 과	지 방 간 호 주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 간 선 택 제 근 무 해 제 를 명 함

2025. 5. 16 字.

[발령 제213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소 속	직 급	
1	류 승 희	대 방 동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 간 선 택 제 근 무 해 제 를 명 함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3 조 제 2 항 제 4 호 규 정 에 따 라 휴 직 을 명 함 (2025년5월19일부터 2026년11월11일까지)

2025. 5. 19.字.

동
작
구
보

제
1
9
4
5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